

2017년 4월 22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7. 4. 24.(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7. 4. 24.(월) 10:00 ~ 2017. 4. 26.(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7. 5. 11.(목)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 ③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 ④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풍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2】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의 피고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문 3】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위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문 4】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부담한다.
-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는 자로서 본인의 승낙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문 5】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②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③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문 6】 공유 및 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문 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 없으므로 매수인으로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없다.
- ④ 주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주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주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문 8】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 ③ 피해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공박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 9】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고, 비록 임대인이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보증금이 수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문10】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는 위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11】 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문12】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바,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②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또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3】 매매의 예약 또는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응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는 채권자 전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 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문14】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③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 ④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문15】 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바, 일단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소비대차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16】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매수 후 철거한다는 조건 없이 그 경매 절차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④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7】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③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1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문19】 유류분 및 기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③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④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문20】 입양 및 친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친양자 입양에 따른 효력으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므로, 실령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친생의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이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문21】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 ②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다.
- ③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또는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22】 전자소송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에 대한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그 추완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면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 ③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기록 사건이 되지만,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때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심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23】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합의부 사건으로 청구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소는 합의부 관할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적법하게 병합된 것이라면 관할원인으로 된 청구가 나중에 취하, 각하되거나 변론의 분리가 있어 병합관계가 소멸되어도 다른 청구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할 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 ④ 관할권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24】 민사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를 경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소장부분 송달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 ②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피고경정은 신청권자인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피고경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소의 제기해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경정신청서의 제출시 발생한다.

【문2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②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각 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③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료 등은 부동산의 인도소송에 부대목적이 되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문26】 무변론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②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는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 ③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관련 심판문만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문27】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로 청구하도록 하거나 연 15%의 이율 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② 피고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한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자신의 것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피고에게 석명하도록 권고한다.
- ③ 보증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인영·필적감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④ 부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고,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은 항변하는 자가 부담한다.

【문28】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송달이 무효인 경우, 송달서류가 기일통지서인 때에는 기일 시작의 효력이 없고 송달서류가 판결정본인 때에는 설령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②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
- ④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 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문2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치유될 수 없으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영업소·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근무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다.
- ③ 재가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 각자대표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지만,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30】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방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비교란에 각 증거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한다.
- ② 증거목록은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직권분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 ③ 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④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

【문31】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론종결 후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 ② 판결 선고 직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우선 피고에게 취하서 부분을 송달하고 이와 별도로 양쪽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한 개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항소한 때에는 병합청구 모두 확정차단 및 이심되고,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등을 통하여 청구를 확장하지 않는 한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에 확정된다.
- ④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도 상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또는 취하간주)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

【문32】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조사에서는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 ② 일단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문서제출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프라이버시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의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에 관하여 법원은 그 문서의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문서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기일에서 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문3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 ④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문34】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② 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참가신청의 취하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허용되며, 참가신청의 취하에 있어서는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 ④ 보조참가인에게는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독자적인 소송참여권이 인정되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35】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룰 수 있고, 항소심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판결로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경우에는 그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 ②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분할측량감정을 신청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③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자 또는 그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 ④ 원고가 경락을 받아 인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소유권취득일로 차임청구 기준일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보정권고한다.

【문37】 다음 중 변론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액사건에서 판사가 바뀐 경우
- ② 소송이송에 있어서 이송 전에 변론이 진행된 경우
- ③ 환송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 ④ 재심사건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경우

【문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부분이 송달되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다.
- ② 기일해태는 동일 심급의 동종의 기일에서 2회 있어야 하나 반드시 연속하여 2회 계속될 필요는 없으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도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③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이후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종국처리하여야 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째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39】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도 포함된다)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②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취하권자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면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
- ③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말로 소를 취하한 때에는 변론조서에 ‘원고, 소 취하’라고 기재한다.
- ④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40】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그 이의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권고결정 상에 원고로 표시된 양도인이 그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이의의 방법으로서는 다룰 수 없고 양도인을 상대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 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 ③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문 2】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② 절도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였는데,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3】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 ③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문 4】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가 다목적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면, 위 금전은 여전히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④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 5】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나, 불법감금의 기회에 협박이 행하여졌어도 그것이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개의 동기·원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④ 甲 중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중친회 규약 등을 공탁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중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금받은 후, 이를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 중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한다.

【문 6】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행위하는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③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 ④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②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의 일환으로 변호인이 진범인 乙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정범 또는 그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이 아닌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문 8】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그 해당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 돈의 수수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②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0】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②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도소에서 점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점견신청에 대하여 구 형형법 제18조 제2항(진폭 이외의 자와의 점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점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는 인정되나, 점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 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실제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물어 보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죄증이 뚜렷한데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했다면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양형에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에 담긴 피의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실제 공범이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그 때까지 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과 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은 적법한 소제탐지 등 절차를 거쳐 다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을 소환한 후 증거조사를 새로이 해야 하나, 공소장 부분을 다시 송달할 필요는 없다.
- ② 법원이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와 전화번호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수감 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2017. 2. 6. 접수되었는데, 같은 해 2. 2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받아 상고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항소심은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 ②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사이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그 때에는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했다면, 사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해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면, 그 후 피고인이 보정한 주소로 재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후 변호인 없는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새로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검사가 강도살인죄로 공소시효기간 내에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할 경우, 강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더라도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사람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 죄는 무죄, 다른 죄는 유죄가 선고되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상고심의 판단 범위에서 벗어난다.
- ② 주간에 주거침입 후 절도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유죄 부분까지 파기하여 환송해야 한다.
- ③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유죄만 인정하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무죄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법은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필로폰 매매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필로폰 가액을 추정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추정을 하지 아니한 부분만 불복대상으로 상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도 상소의 효력이 미쳐 함께 이심된다.

【문17】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의 일시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그로 인하여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 일시를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달리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 ③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할 경우,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도, 법원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할 필요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소된 사건(이하 ‘제1사건’) 재판이 진행 중 추가기소된 사건(이하 ‘제2사건’)이 병합되었고, 제2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까지 행해졌다면, 그 직후 제1사건 구속기간이 곧 만료될 경우 법정 외에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제2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구금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된다.
- ③ 법원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고, 그 재판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이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남은 차수에 한하여만 갱신을 할 수 있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련 사건 제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을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해야 한다.
- ② 사기죄로 기소되어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③ 일반 국민이 군용물절도죄를 저질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경우,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허위공문서작성죄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 ②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나중에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더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하지 않는다.

【문 7】 채권배당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국가(소관 : ○○지법 공탁관, 압류할 채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얻은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50만 원을 압류하고, 그 후 채권자 乙이 100만 원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 乙의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이므로 추심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채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채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 ④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문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 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에 포함된다.

【문 9】 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 ② 일괄매각대상 목적물은 하나의 매각대상으로 취급되는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 일괄경매를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문10】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부작위의무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룰 수 있다.
- ② 대체집행에서 법원이 수권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론을 열 필요는 없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④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11】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②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거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 후 공탁한다.
- ③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집행할 판결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등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문12】 경매의 취하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경매신청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④ 매수신고가 있는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문13】 부동산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의 채권자가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이중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7조가 적용된다.
- ② 선행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경매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고,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로 매각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중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행사건에서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 ④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생긴 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할 수 있다.

【문14】 보전처분신청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 ② 보전처분신청은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등 실효법상의 효과가 있으나,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에 의한 가압류절정과 같이 부적법하고 당연무효인 가압류는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문15】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 ③ 재산명시절차는 집행보조절차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

【문16】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집행이 있는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다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중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③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가압류절차도 본집행절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17】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임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있음),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대금지급일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 ②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③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납입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대금지급일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해 丁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18】 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 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 외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 ③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등 허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19】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한정승인으로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상속인은 제3자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③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④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문20】 제3자의의 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행사가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더라도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집행채권자에게 제3자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②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 ③ 강제집행 개시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④ 선행의 가압류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의의 소에 의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①책형

【문 1】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 ③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④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문 2】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처분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인영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④ 재외국민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문 3】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 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들은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4】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데, 대지사용권으로서 이와 같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 ②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대지권 변경등기는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관해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다.
- ④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 5】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라도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있을 수 없다.
- ③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아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등기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문 6】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대장 멸실 후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시장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어야 하지만,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①책형

【문 7】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환매의 특약은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②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는 별개로 신청하나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고,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된다.
- ③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④ 환매특약의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문 8】 전세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 ②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지난 전세권의 이전등기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 ③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는 존속기간 연장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 ④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같은 사람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수 있다.

【문 9】 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 ④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문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
- ②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부인등기의 말소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문1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변제공탁사건 중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이 공탁기록상 나타나는 사건에 한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공탁 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④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있다.

【문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 및 판례에 의함)

(사례1) 사업시행자 甲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사례2) 甲이 확정판결에 따라 乙과 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보기>

- ㄱ. (사례1) 수용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丙 중중은 피공탁자 乙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사례1) 수용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丙 중중은 피공탁자 乙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이를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사례2) 乙과 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ㄹ. (사례2) 乙은 丙을 상대로 자신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13】 공탁관이 지급인가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장기미제 공탁사건(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금전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공탁사건
- ②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③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한 절대적불확지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
- ④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①책형

【문14】반대급부조건부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②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무효이다.

【문15】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 3천만 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고, 甲은 채무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 ② 乙은 7천만 원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고, 이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7천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丙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3천만 원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16】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청구서 등에 서명을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문17】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3천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甲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는 모두 개별사안임)

<보기>

- ㄱ.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甲이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후 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 ㄴ. 乙의 채권자 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ㄷ.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 ㄹ. 甲이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가 도래하자 위 채무를 공탁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문18】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 공탁에 적용한다.
- ②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의 집행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 ③ 공탁자 甲은 피공탁자 乙의 주소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소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스캔에 의한 원거리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공탁금 지급청구인이 개인이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리인에 의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문19】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 ④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甲이 수용개시일 전에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라도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20】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은 피공탁자 乙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더라도 乙에게 공탁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 ② 피공탁자 乙은 피담보채권 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의 방법(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명령)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에 의해서도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본안에서 甲이 승소하였다면 甲의 채권자 丙은 집행권원을 얻어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甲을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절차를 밟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017년 4월 22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7. 4. 24.(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7. 4. 24.(월) 10:00 ~ 2017. 4. 26.(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7. 5. 11.(목)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위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문 2】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부담한다.
-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는 자로서 본인의 승낙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주인을 알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문 3】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 ③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으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 ④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4】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 상태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의 피고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문 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 없으므로 매수인으로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없다.
- ④ 주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주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주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문 6】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 ③ 피해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공박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 7】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고, 비록 임대인이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보증금이 수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문 8】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②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③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문 9】 공유 및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공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공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공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문10】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바,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②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 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또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1】 매매의 예약 또는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는 채권자 전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 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문12】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는 위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13】 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문14】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매수 후 철거한다는 조건 없이 그 경매 절차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입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④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5】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③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16】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③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 ④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문17】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일단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소비대차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1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문19】 유류분 및 기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③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④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문20】 입양 및 친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친양자 입양에 따른 효력으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므로, 실령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친생의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이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문21】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 ②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다.
- ③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또는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22】 전자소송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에 대한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그 추완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면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 ③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기록 사건이 되지만,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때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심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23】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로 청구하도록 하거나 연 15%의 이율 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② 피고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한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자신의 것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피고에게 석명하도록 권고한다.
- ③ 보증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인영·필적감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④ 부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고,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은 항변하는 자가 부담한다.

【문24】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송달이 무효인 경우, 송달서류가 기일통지서인 때에는 기일 시작의 효력이 없고 송달서류가 판결정본인 때에는 설령 당사자가 판결전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②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
- ④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 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문25】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치유될 수 없으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영업소·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근무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다.
- ③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 각자대표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지만,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26】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합의부 사건으로 청구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소는 합의부 관할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적법하게 병합된 것이라면 관할원인으로 된 청구가 나중에 취하, 각하되거나 변론의 분리가 있어 병합관계가 소멸되어도 다른 청구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할 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 ④ 관할권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27】 민사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를 경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소장부분 송달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 ②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피고경정은 신청권자인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피고경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경정신청서의 제출시 발생한다.

【문28】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②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각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③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료 등은 부동산의 인도소송에 부대목적성이 되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문29】 무변론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②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는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 ③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관련 심판문만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문3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 ④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문31】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② 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참가신청의 취하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허용되며, 참가신청의 취하에 있어서는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 ④ 보조참가인에게는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독자적인 소송참여권이 인정되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32】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룰 수 있고, 항소심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판결로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경우에는 그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33】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방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비고란에 각 증거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한다.
- ② 증거목록은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직권분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 ③ 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④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

【문34】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론종결 후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 ② 판결 선고 직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우선 피고에게 취하서 부분을 송달하고 이와 별도로 양쪽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한 개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항소한 때에는 병합청구 모두 확정차단 및 이심되고,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등을 통하여 청구를 확장하지 않는 한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에 확정된다.
- ④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도 상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또는 취하간주)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

【문35】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조사에서는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 ② 일단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문서제출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프라이버시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의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에 관하여 법원은 그 문서의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문서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리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 ②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분할측량감정을 신청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③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자 또는 그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 ④ 원고가 경락을 받아 인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소유권취득일로 차임청구 기준일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보정권고한다.

【문37】 다음 중 변론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액사건에서 판사가 바뀐 경우
- ② 소송이송에 있어서 이송 전에 변론이 진행된 경우
- ③ 환송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 ④ 재심사건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경우

【문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부분이 송달되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다.
- ② 기일해태는 동일 심급의 동종의 기일에서 2회 있어야 하나 반드시 연속하여 2회 계속될 필요는 없으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도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③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이후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종국처리하여야 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째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39】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도 포함된다)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②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취하권자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면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
- ③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말로 소를 취하한 때에는 변론조서에 ‘원고, 소 취하’라고 기재한다.
- ④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40】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그 이의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권고결정 상에 원고로 표시된 양도인이 그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룰 수 없고 양도인을 상대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 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 ③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문 2】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가 다목적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면, 위 금전은 여전히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범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④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 3】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 ③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문 4】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② 절도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였는데,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②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의 일환으로 변호인이 진범인 乙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정범 또는 그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이 아닌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문 6】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증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그 해당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 돈의 수수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증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7】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나, 불법감금의 기회에 협박이 행하여졌어도 그것이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개의 동기·원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④ 甲 중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중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중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은 후, 이를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 중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한다.

【문 8】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행위하는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③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 ④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 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②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0】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②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구 형형법 제18조 제2항(진폭 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는 인정되나,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 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실제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물어 보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죄증이 뚜렷한데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했다면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양형에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에 담긴 피의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실제 공범이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그 때까지 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과 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은 적법한 소제탐지 등 절차를 거쳐 다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을 소환한 후 증거조사를 새로이 해야 하나, 공소장 부분을 다시 송달할 필요는 없다.
- ② 법원이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와 전화번호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다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수감 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2017. 2. 6. 접수되었는데, 같은 해 2. 2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받아 상고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 죄는 무죄, 다른 죄는 유죄가 선고되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상고심의 판단 범위에서 벗어난다.
- ② 주간에 주거침입 후 절도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유죄 부분까지 파기하여 환송해야 한다.
- ③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유죄만 인정하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무죄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법은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필로폰 매매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필로폰 가액을 추정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추정을 하지 아니한 부분만 불복대상으로 상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도 상소의 효력이 미쳐 함께 이심된다.

【문14】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의 일시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그로 인하여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 일시를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달리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 ③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도, 법원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할 필요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항소심은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 ②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사이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그 때에는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했다면, 사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면, 그 후 피고인이 보정한 주소로 재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후 변호인 없는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새로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검사가 강도살인죄로 공소시효기간 내에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할 경우, 강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더라도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사람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소된 사건(이하 ‘제1사건’) 재판이 진행 중 추가기소된 사건(이하 ‘제2사건’)이 병합되었고, 제2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까지 행해졌다면, 그 직후 제1사건 구속기간이 곧 만료될 경우 법정 외에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제2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구금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된다.
- ③ 법원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고, 그 재판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이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남은 차수에 한하여만 갱신을 할 수 있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련 사건 제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을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해야 한다.
- ② 사기죄로 기소되어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③ 일반 국민이 군용물절도죄를 저질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경우,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허위공문서작성죄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 ②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나중에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더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하지 않는다.

【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대지부분만이 매각된 경우,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는 신축된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 2】 채무자 A의 부동산이 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배당가능금액은 6,000만 원이다. 배당순위가 아래와 같을 경우 乙의 예상 배당액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순위 가압류채권자	甲: 청구금액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	乙: 피담보채권액 5,000만 원
3순위 강제경매신청인	丙: 청구금액 4,000만 원

- ① 2,500만 원 ② 3,000만 원
- ③ 4,500만 원 ④ 5,000만 원

【문 3】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무자력이 아니면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④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문 4】 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 등을 통지받을 권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된다.
- 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③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이 아닌 그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데 동 증명은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문 5】 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 ②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하고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 6】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각하된 때에는 그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가처분목적물의 특정승계인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④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정변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 7】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부작위의무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룰 수 있다.
- ② 대체집행에서 법원이 수권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론을 열 필요는 없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④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 8】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② 집행할 판결이 있는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 후 공탁한다.
- ③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집행할 판결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등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문 9】 경매의 취하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경매신청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④ 매수신고가 있는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문10】 채권배당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국가(소관 : ○○지법 공탁관, 압류할 채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얻은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50만 원을 압류하고, 그 후 채권자 乙이 100만 원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 乙의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이므로 추심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 ④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문11】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 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와 소유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에 포함된다.

【문12】 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 ② 일괄매각대상 목적물은 하나의 매각대상으로 취급되는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 일괄경매를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민사집행법 20문】

②책형

【문13】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집행이 있는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다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③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가압류절차도 본집행절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14】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대금지급일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 ②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③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납입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대금지급일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해 丁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15】부동산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의 채권자가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이중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7조가 적용된다.
- ② 선행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경매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고,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로 매각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행사건에서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 ④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생긴 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할 수 있다.

【문16】보전처분신청 및 그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 ② 보전처분신청은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등 실제법상의 효과가 있으나,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에 의한 가압류결과와 같이 부적법하고 당연무효인 가압류는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문17】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 ③ 재산명시절차는 집행보조절차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

【문18】 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 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 외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 ③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등 허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19】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한정승인으로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상속인은 제3자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③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④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문20】 제3자의의 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행사가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더라도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집행채권자에게 제3자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②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 ③ 강제집행 개시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④ 선행의 가압류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의의 소에 의해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문 1】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데, 대지사용권으로서 이와 같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 ②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대지권 변경등기는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관해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다.
- ④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 2】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라도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있을 수 없다.
- ③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아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등기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문 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대장 멸실 후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시장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어야 하지만,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각 하하여야 한다.

【문 4】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 ③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④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문 5】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처분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인영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④ 재외국민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문 6】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 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관리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들은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②책형

【문 7】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환매의 특약은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②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는 별개로 신청하나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고,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된다.
- ③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④ 환매특약의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문 8】 전세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 ②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지난 전세권의 이전등기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 ③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는 존속기간 연장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 ④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같은 사람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수 있다.

【문 9】 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 ④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문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
- ②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부인등기의 말소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문1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변제공탁사건 중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이 공탁기록상 나타나는 사건에 한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공탁 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④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있다.

【문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 및 판례에 의함)

(사례1) 사업시행자 甲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사례2) 甲이 확정판결에 따라 乙과 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보기>

- ㄱ. (사례1) 수용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丙 중중은 피공탁자 乙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사례1) 수용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丙 중중은 피공탁자 乙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이를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사례2) 乙과 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ㄹ. (사례2) 乙은 丙을 상대로 자신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13】 공탁관이 지급인가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장기미제 공탁사건(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금전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공탁사건
- ②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③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한 절대적불확지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
- ④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②책형

【문14】 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3천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甲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는 모두 개별사안임)

<보기>

- ㄱ.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甲이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후 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 ㄴ. 乙의 채권자 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ㄷ.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 ㄹ. 甲이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가 도래하자 위 채무를 공탁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문15】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 공탁에 적용한다.
- ②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의 집행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 ③ 공탁자 甲은 피공탁자 乙의 주소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소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스캔에 의한 원거리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공탁금 지급청구인이 개인이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리인에 의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문16】 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 ④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甲이 수용개시일 전에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라도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17】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②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무효이다.

【문18】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 3천만 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고, 甲은 채무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 ② 乙은 7천만 원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고, 이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7천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丙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3천만 원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1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청구서 등에 서명을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문20】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은 피공탁자 乙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 공탁금 출금청구를 하더라도 乙에게 공탁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 ② 피공탁자 乙은 피담보채권 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의 방법(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명령)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에 의해서도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본안에서 甲이 승소하였다면 甲의 채권자 丙은 집행권원을 얻어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甲을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절차를 밟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017년 4월 22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7. 4. 22.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甲은 2015. 3. 1. 乙에게 자기 소유인 X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3. 31.까지 각 지급받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2015. 9. 30.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위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공통 사실관계를 기초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문항은 상호관련성이 없고, 공휴일 여부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총50점】

가. 위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乙은 2015. 3. 31.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불경기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한편, 乙의 채권자 A는 乙에 대한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8. 25. 乙의 甲에 대한 X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 결정은 2015. 9. 3. 甲에게 송달되었다. 2016. 2.초경 乙은 겨우 잔금을 마련하여 甲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은 X토지 시가상승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은 2016. 2. 15.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잔금 2억 5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같은 날 甲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최선의 항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예상될 수 있는 판결의 결과[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나. 위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2015. 3. 10. 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중도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乙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단순승낙을 하였다. 丙은 2016. 2. 15.

乙을 상대로 위 양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과 乙이 모두 출석한 변론 기일에서 乙은 ㉠ 甲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는 丙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丙은 ㉢ 중도금 지급의무는 잔금 지급의무와 달리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 乙이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단순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다시 乙은 ㉣ 丙이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당사자의 주장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전제할 때 예상될 수 있는 판결의 결과[청구전부 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와 그 이유(위 ㉠, ㉢, ㉡, ㉣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포함시킬 것)를 설명하시오. 【30점】

【문 2】 甲은 귀농을 결심하고 농지와 거주할 집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다. 甲은 2016. 7. 24.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A토지와 A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B가옥(가옥 부지 포함, 이하 동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을 소개받았다. 甲은 乙에게 귀농을 결심한 후 농지와 거주할 가옥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다. 乙은 甲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이 매매계약서에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였고, 2016. 9. 7.에 이르러 甲에게 A토지와 A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B가옥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5조, 제6조 이외에 제5조, 제6조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토양의 확인 의무)

① A토지의 토양이나 토질 등이 甲이 희망하는 농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는 甲에게 있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甲이 부담한다.

② 甲은 A토지의 품질 등을 이유로 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해제·해지를 乙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6조(특약사항)

甲과 乙은, 甲이 A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B가옥도 매매 목적물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임을 확인한다.

甲은 2016.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A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17. 3.경 A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위 매립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복원하는 데는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위 폐기 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복원하지 아니하는 한 A토지를 농경지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乙은 위 매매계약 당시 A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공통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30점】

가. 이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나. 위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포기하였으나, B가옥의 시세가 상승하자, A토지에 대해서만 계약을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A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그 이외에 다른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A토지만에 대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은 2017. 1. 24. 乙과 사이에,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매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乙은 2017. 3. 13.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X부동산의 가액은 6천만 원이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귀하가 甲으로부터 위 사실관계를 듣고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요청받았다면 어떠한 주장을 하라고 조언할 것인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민 사 소 송 법

【문 1】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제1심 법원(이하 ‘원심법원’이라 함)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소송대리인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공통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40점】

가. 위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위 소송계속 중 제1심의 변론종결 전에 甲은 사망하였고 甲에게는 상속인 A, B, C가 있다.

(1)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丙이 甲으로부터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 A, B, C가 밟아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나. 위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丙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문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충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참여관이 보충송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검토할 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문 3】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017년 4월 22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7. 4. 22.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A토지가 亡 乙 및 亡 丙의 공유하던 토지로서 위 공유자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A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亡 乙 및 亡 丙을 상대로 피고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A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甲이 소송사기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특별법 위반의 점은 제외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0점】

【문 2】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甲이 소유하고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A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丙으로부터 B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부동산에 관하여도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의 요청에 따라 B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乙은 丁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A부동산과 B부동산에 관하여 甲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丁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30점】

가. A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나. B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 3】 甲은 乙에게 ○○은행 노조위원장인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그 후 乙이 A를 미행하여 A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甲에게 이를 알렸다.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A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지만, 乙은 이를 거절하고 동영상을 이용하여 A를 공갈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공갈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점】

【문 4】 甲은 A에게 차용 채무금 6,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가 그 영수증과 같이 채권액 6,8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원의 공정증서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6,800만 원에 대한 채권 확보수단으로 甲의 주택을 가압류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점】

형사소송법

【문 1】 甲은 乙과 공모하여 B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매 A에게 판매한 사실로 기소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 되었다. 이후 공범 乙도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乙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甲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甲은 공판정에 출석하였으나, 자신은 위 벌금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고,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甲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25점】

【문 2】 다음의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논거를 들어 각각 설명하시오.(아래 사안은 각각 별개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30점】

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5점】

나. 피고인 甲, 乙이 서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공동피고인이 되었는데, 피고인 甲, 乙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A를 선정한 경우 【5점】

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B를 선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상태에서, 항소심 법원이 위 B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2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자, 항소심 법원이 변론 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변론을 위한 공판기일에는 국선변호인 B가 출석하였음) 【10점】

라.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20일 경과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C를 선정하였는데, 위 C가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 20일 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10점】

【문 3】 검사는 피고인 甲을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하였는데,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甲은 2016. 7. 1.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길 ○○ 빌라 앞에서 동네 사람들 5명이 듣는 가운데 乙이 유부녀와 바람났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甲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위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甲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위 약식명령은 기한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아래 사안은 각각 별개이고, 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45점】

가. 피고인 甲이 2017. 4. 5. 약식명령등본이 첨부된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노역장 유치를 당하면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고지받고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무인하였는데, 위 집행지휘서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이 도과되어 기각결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甲이 2017. 4. 14.에야 구치소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나. 만일 피고인 甲이 구제되어 정식재판청구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1심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甲의 피해자 乙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져 법원이 직권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다. 만일 피고인 甲이 구제되어 정식재판청구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1심 법원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 甲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甲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위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다만, 제1심에서 피고인 甲의 자백에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함) 【10점】

라. 위 다.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 甲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甲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에 선고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과 합의하겠다는 서면만 제출한 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항소심 법원은 선고를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제3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 피고인 甲의 출석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15점】